

廣平大君夫人의 東萊溫泉行 경과와 그 의미

- 광평대군과 사별 후 극복을 위한 선택이 끼친 영향 -

이 주 희*

- I. 머리말
- II. 東萊溫泉 사건과 廣平大君夫人
- III. 廣平大君의 죽음과 靑孀의 佛事
- IV. 癸酉靖難 前夜의 溫泉治病 旅行
- V. 世祖의 즉위와 王族들의 東萊溫泉行
- VI.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시대에는 왕실 여성들의 외유나 온천행이 있었지만 드물었고, 그 장소도 경기도 부근이나 충청도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것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만 가능했다.

1453년 초 서울에서 출발한 27세의 청상과부 廣平大君夫人 申氏의 행렬이 三浦의 왜인이 득실대는 부산 東來溫泉에 이르렀고, 그녀는 그곳에서 몇 달간 머물며 온천을 했다.

이는 성리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상식을 넘는 외유였다. 당연히 유교 사상으로 무장된 신하들은 이러한 왕실 여성의 행위에 대해 시정과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렇기에 광평대군 부인에 관한 기록이 實錄에 남았다. 그녀 생활의 好否와 신하들의 간섭 정도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조교수 / bog2duru@jwu.ac.kr

1444년 남편 광평대군 이여가 은몸이 수포가 부어오르는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19세의 그녀에게는 갓 태어난 여섯 달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 영순군이 있었다.

그녀는 불교의 세계에 들어섰다. 광평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 옆에 齋庵(見性庵)을 창건하였다. 불사는 그녀가 불행에 맞서는 방법이었다. 시아버지 세종이 살아 있을 당시 그녀의 불사에 대해 실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다가 세종이 죽고 큰아들 문종이 즉위한 이후 司憲掌書 金淡이 그녀의 佛事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왔다. 문종은 불쌍한 청상과부 弟嫂를 어떻게든 변호했다. 하지만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광평대군 부인은 문종 대에 佛事 문제로 조정 관리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문종이 죽고 자신에 대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병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1453년 정월,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경상도 東萊館舍에 머물면서 몇 달 동안 온천을 했다. 그런데 그녀가 溫井을 독점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단종이 부인을 소환하였다. 이때 수양대군이 나서서 그녀의 동래온천행은 ‘治病을 위한 여행’이지 外遊라고 볼 수 없다며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단종의 조정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수양대군의 발언으로 그녀에 대한 추핵의 소리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한편 그녀를 추핵한 당상관들은 수양대군의 政敵이기도 했다. 수양대군은 癸酉靖難을 일으켰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녀를 비방하던 당상관들은 한꺼번에 도살되었고, 그녀에게는 자유가 찾아왔다. 광평대군 부인이 동래온천을 다녀온 후 왕실 사람들이 자주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468년 예종은 드디어 치병을 위한 왕실 여성의 동래온천행을 허가했다. 조선 왕실의 동래온천 사랑은 광평대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주제어

廣平大君 夫人, 世祖, 癸酉靖難, 東萊溫川, 溫泉治病 旅行

I. 머리말

廣平大君 夫人 申氏는 명나라에서 가져온 꾸러미를 받았다. 그 속에는 그녀가 특별 주문한 물건이 있었다. 『無註妙法蓮華經』(법화경)이었다. 이 경전은 희귀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에 존재하는 법화경은 모두 송나라 戒環이 1126년(宋 仁宗 4)에 주석을 단 것이었다. 때는 1457년 10월 11일 賀正使로 명나라에 갔던 金守溫(1410~1481)이 이듬해 귀국한 직후 어느 날이었다.¹⁾

김수온은 세종 때 수양대군·안평대군이 존경하던 高僧 信眉의 동생으로 불경에 통달해 있었다.²⁾ 특히 그는 문장에 뛰어났다.

廣平大君夫人은 김수온에게 『無註妙法蓮華經』의 인쇄가 가능하도록 木板藏經을 만들게 지시 했다. 見性菴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위치는 현재 서울 강남 삼성동 선릉역 부근이다. 1459년 4월에 작업을 시작하여 그해 6월에 끝마쳤다. 세조 5년에 간행된 『無註妙法蓮華經』의 발문은 이러하다.

‘法華 1經은 단문[운문]이고 각각 註가 있다. 我國이 행하는 바 모두 戒環의 주석본을 좇아 단문의 法華經이나 장엄하도다.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明에 있던 註 없는 唐本 한 본을 구했는데, 字劃이 대단히 방정해서 크고 작은 것이 적절했다. 主上殿下 萬萬歲! 中宮殿下 萬萬歲! 世子低下 千千春之願! 見性菴에서 개간하였는데 天順 3년(1459) 4월 어느 날에 시작하여 그해 6월에 마쳤다. 이해 7월 초5일 嘉靖大夫 同知中樞院事臣 金守溫이 教旨를 받들어 撰進하였다³⁾

- 1)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1457) 10월 11일 신축, “遣史曹參判金連枝, 中樞院副使金守溫, 奉表箋 如大明, 賀正兼獻白黃鷹鷄鵲.”
- 2) 『성종실록』 권130, 성종 12년(1481) 6월 7일 경술, 金守溫 劄기 “然以信眉之弟, 酷耽禪學, 佞佛太甚. 嘗投檜巖寺, 欲爲髡不果, 其詭行如此. 又無檢身之律, 或鋪書籍, 寢處其上, 或衣布, 加金帶履屐見客. 性迂拙無幹局, 有心治產, 而居計甚疏, 處官事, 闊略無執守, 殊不類爲文氣象, 朝廷終不以館閣之任畀之, 與梁誠之、吳伯昌, 上書請封功臣, 得參佐理. 嘗自號乖崖, 有《拭疣集》行于世.”
- 3) 세조 5년(1459) 간행 『묘법연화경』 발문 ‘法華一經有單有註 我國所行率皆戒環疎而單法華則止於大藏之餘爾也 廣平大君夫人申氏得內出唐本無註者一本 字劃甚楷大小適宜

위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主上(세조)殿下와 中宮殿下(중전)의 萬萬歲와 世子(예종)低下의 千千春之願을 비는 내용이다.

당시가 세조의 치세였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면 너무나 간단하다. 필자는 여기에 신씨의 ‘감정’이 깊게 이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세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녀의 삶은 자유로워졌다. 그녀에게 수양대군은 든든한 구원자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 여성들의 외유나 온천행이 있었지만 드물었고, 그 장소도 경기도 부근이나 충청도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1453년 초 서울에서 출발한 27세의 청상과부 광평대군 부인 신씨의 행렬이 三浦의 왜인이 득실대는 부산 동래온천에 이르렀고, 그녀는 그곳에서 몇 달간 머물며 온천을 했다.

이는 성리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상식을 넘는 외유였다. 조정 당상관들이 그녀를 추핵하려고 했다. 그때 유일하게 수양대군만이 그녀를 변호해주었고 그들은 10월 癸酉靖難 당시 誅殺되었다.

이 글은 ‘그녀는 왜 서울에서 2~3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온천들을 체쳐두고 그렇게 먼 동래온천 까지 갔을까?’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王家로 시집온 그녀와 그 주변의 생활, 그 공간에 대해 다루었다. 다음으로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그녀의 생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동래온천을 찾은 이유와 그것을 추핵하려는 조정의 堂上官들과 변호하는 首陽大君의 논쟁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계유정난 전야 政敵 사이의 언쟁이었다. 마지막으로 세조 집권 후 자유로워진 그녀의 생활과 동래온천행을 찾기 시작한 왕족들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於是爲主上殿下萬萬歲 中宮殿下萬萬歲 世子低下千千春之願開刊於見性菴以天順三年(1459)四月有日肇 功其年六月告訖 … 是年七月初五日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臣 金守溫奉教撰’

II. 東萊溫泉浴 사건과 廣平大君夫人

1453년 6월 8일(음력-이하생략) 단종(1452년~1455년)은 申自守를 조정에서 파직시켰다. 이유는 그의 딸인 광평대군 부인 신씨(1426~1498)가 부산 동래까지 내려가서 온천을 했기 때문이었다.

舍人 羅洪緒가 당상관들이 의논한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婦女는 三從之道가 있어, 광평대군 부인은 도의상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東萊溫泉에 가서 왜인들이 모두 그가 멀리서 온 것을 알게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아버지 신자수가 가장으로서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⁴⁾

사인 나홍서는 당상관들의 논의 결과를 왕에게 전했고, 어린 단종이 이를 따랐다. 당시 당상관들 가운데는 선대왕 文宗이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였을 때,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한 영의정 皇甫仁, 우의정 金宗瑞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종 즉위 후 좌의정이 된 鄭策 등도 논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광평대군 부인이 친정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기에, 가장으로서 그녀를 단속하지 못한 申自守가 책임을 지고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인들이 그녀가 온천에 온 것을 알게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당상관 신하들이 동래 온정에서 여러 달 목욕한 宗室命婦를 규탄하는 일은 이보다 앞선 4월에 시작되었다.

舍人 李禮長이 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평대군 부인이 동래 온정에서 목욕한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달이어서, 경상도 일대 읍에서 支待하는 폐단이 있

4)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6월 8일 기사 “舍人羅洪緒將堂上議啓曰: “婦有三從之道, 廣平大君夫人, 義當從父, 今歸東萊溫泉, 至使倭人皆知其遠來, 而父申自守以家長不能禁止, 不可不懲, 請罷職.” 從之.”

습니다. 또 듣건대, 왜인들이 목욕할 수가 없어서 머물러 기다리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니 더욱 불가합니다. 여자에게는 삼종지도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이미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광평대군이 이미 서거하였고 그 아들 '영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신자수가 이를 막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신자수를 불러서 그 사유를 묻고 법사에 하달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하였다.

곧 신자수를 불러서 물기를, "부인이 간 것을 어찌 아뢰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멀리 떠나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신자수가 아뢰기를, "부인이 목욕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여 처음에는 충청도로 갔습니다. 뒤에 경상도로 향한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를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심하여 부득이하게 東萊로 갑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治病이라고 하므로 억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즉시 사헌부에 하달하여 그를 국문하였다.⁵⁾

위의 기록에서 간파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이었던 광평대군 이여가 20세에 사망하여(1444) 광평대군 부인 신씨는 청상과부가 되었으며, 그녀의 아들 李永順이 어렸으므로, 친정 아버지 신자수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의 부산 동래온천행을 막지 못한 친정아버지 신자수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둘째,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治病을 위해 동래온천에 수개월 간 머물렀고, 이 때문에 그곳을 찾아왔던 왜인들이 목욕을 할 수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 곧 과부 왕자비가 삼포의 왜인들이 득실대는 동래온천에서 목욕을 여러 달 했다는 것을 당상관의 대신들이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사건화되었던 것이다.

셋째, 그녀는 왕실 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충청도에 있는 온양온천에

5) 『단종실록』 권6, 端宗 1년(1453) 4월 24일 신해 “舍人李禮長將堂上議啓曰：“廣平大君夫人浴于東萊溫井，今已累月，諸邑支持有弊。又聞倭人不得沐浴，留待者頗多，尤爲不可。女有三從之道，在家從父，既嫁從夫，夫死從子。今廣平已逝，其子永順幼少，而其父申自守莫之禁焉，至於如此，請召自守，問其事由，下法司推鞠。”即召自守問曰：“夫人之去，何不啓達？何遠去至此，而不禁乎？”自守啓曰：“夫人欲沐浴治病，初往忠清道。後聞向慶尙道，遣人止之，答曰：‘病深，不得已往東萊。’臣亦以治病之故，不得強禁。”即下司憲府鞠之。”

갔다 부산 동래온천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경부고속도 노선을 타고 서울과 동래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동래온정 부근의 여러 읍이 그녀와 그 일행의 음식물·일용품 등을 공급했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먼저 광평대군 부인의 혼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1426년(宣德 元年) 2월 정묘일 서울 어느 저택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명문가 平山申氏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성격이 맑았으며, 참으로 德이 있었다고 한다.⁶⁾ 1435년 말경 10세가 된 그녀는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왕자비로 간택이 되었다.⁷⁾

이어 6禮의 혼례의식이 행해질 터였다. 이제 모든 시간이 6가지나 되는 의례의 준비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어느 날, 간택된 그녀의 집에 왕실이 혼인의 징표인 교명문을 보내왔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이를 받아 아이들은 납채의식을 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納采使로 왔다면 이 광경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아버지와 형제들로 구성된 納徵納幣使 일행이 왕궁으로 가서 혼인 성립의 징표로 폐물을 바쳤다. 이어 며칠 뒤 周易에 능한 관리가 혼인 날짜를 잡는 告期의 의식이 행해졌다. 혼인 당일인 1436년 1월 13일(음력) 12세의 그녀는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탔다. 오늘의 의식은 이전 궁에서 친정집에 보내온 상궁에게 의례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대로 해야 했다. 궁에 도착한 그녀는 정중한 걸음으로 책명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다.⁸⁾

모든 절차가 끝나고 어느 관리가 그녀를 책명한다는 선언을 했다. 永嘉府夫人에 봉해졌다.⁹⁾ 그 칭호는 宗室命婦로서 正一品의 처에 해당하

6) 전주이씨광평대군과중회, 『전주이씨광평대군과정보』 1권, 회상사, 1997, 272쪽, “幼有淑質 嬉戲異常 不煩姆教 動循禮”(어려서부터 착하고 정숙했고, 노는 것도 평범하지 않았으며, 보모(保母)가 가르침에 수고를 끼치지도 않고 몸가짐이 예에 맞았다.)

7) 「광평대군이여신도비」 “夫人生於宣德元年 2월 정묘, 淑德升聞 世宗擇配大君.”

8) 신병주, 「왕실의 행사: 혼례식과 그 기록」, 『장서각 ACADEMY 일반과정 왕실문화좌』 2011, 107~114쪽 참조.

9) 「광평대군이여신도비」 “夫人… 封永嘉府夫人.”

는 것이었다.¹⁰⁾ 이제 한 살이 많은 신랑 李璵가 그녀를 맞이하는 친영례가 남아 있었다.¹¹⁾ 『세종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광평대군 이여가 신자수의 딸을 친영하였다.¹²⁾

일련의 의식들을 통해 둘은 부부로 맺어졌다. 그들의 첫 신혼살림은 임금과 중전이 거처하는 왕궁 내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둘이 살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船軍 4백 명을 사역하여 軍資監과 광평대군의 第宅을 짓게 하였는데, 임금이 추위에 얼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鎭撫 金自廉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했더니, 홑옷을 입은 사람이 4명이나 있으므로, 즉시 濟用監으로 하여금 동옷[襦衣]을 지어 주게 하였다.¹³⁾

혼인 직후 부부의 저택이 공사에 들어갔다. 위치는 동대문 밖 3리에 있는 현 경동약령시장의 普濟院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안암동이였다.¹⁴⁾

왕자의 집은 보통 대감들의 저택보다 매우 웅장하게 지어졌다. 나중에 일이지만 시아버지 세종도 완성된 집을 보고 놀랐다. 그리하여 “광평대군 이여의 집의 間架가 법도를 넘었다. 이를 헐라고 명하였다.”라고 한다. 하지만 승정원의 만류로 이를 정지했다.¹⁵⁾

서울 장안의 사람들 사이에 광평대군의 저택이 거대하고 화려하다는 소문이 났고, 이것을 의식한 국왕 세종이 그렇다면 그것을 헐어버리겠

10)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1436) 1월 16일 병자, “宗室命婦正一品之妻, 稱某府夫人, 用都護府以上官號”

11) 광평대군은 1425년 5월 임신일에 태어났다.

12)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1436) 1월 13일 기묘, “廣平大君 璵親迎申自守之女.”

13)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1436) 2월 5일 신축, “役船軍四百名, 造軍資監及廣平大君第. 上慮有寒凍者, 命鎭撫金自廉往視, 有着單衣者四人, 卽令濟用監製襦衣給之”

14)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1437) 7월 6일 갑오, “幸東郊觀稼, 駐駕于普濟院北廣平大君新第.”

15)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1438) 7월 14일 병신, “上以廣平大君 璵第間架逾制, 命撤毀之. 承政院啓曰: 旣已造, 請勿毀. 遂停撤毀之命.”

다고 선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왕은 승정원이 만류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라도 해서 사람들의 시기가 섞인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군부부는 새로 지은 집으로 입주했다. 왕궁에서 나와 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때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1437년 3월 20일 그녀가 혼인하고 1년 2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남편 광평대군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祖父 申孝昌의 청탁성 서신이었다. 조정에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신효창의 아들 4형제가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이복형제인 申謹之를 천하다고 하여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할아버지가 손녀사위인 大君에게 직접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신효창 자신의 첩이 낳은 아들 신근지의 벼슬자리를 청한다는 것이었다.

편지를 받은 광평대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인의 할아버지 부탁이 아닌가. 다음날 입궐하여 형 임영대군과 함께 아버지인 국왕에게 "근지는 射藝에 능하여 마땅히 쓸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兵曹의 사람들을 시켜 그의 활 솜씨를 시험하게 하고 성적이 나쁘지 않자 補充軍에 무관 자리 하나를 주었다.¹⁶⁾ 뒤에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1437년 7월 6일 세종과 신하들의 행렬이 동대문을 빠져나갔다. 왕은 동쪽 근교까지 나아가서 그해 농사의 작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곡물 수확량을 예상하기 위해서였다. 농업 국가에서 한해 농사에 국왕은 물론 백성들 삶이 좌우되었다. 마음이 흡족했던지 왕은 돌아가는 길에서 보제원 북쪽에 있는 광평대군의 집으로 어가를 돌리게 했다.¹⁷⁾

16)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1437) 3월 20일 경술, “還給申孝昌職牒. 孝昌孫女適廣平大君 璵, 外孫女適臨瀛大君 璆. 孝昌投書兩大君, 請爵其婢妾子謹之. 兩大君啓: “謹之工於射藝, 宜可用也.” 上命兵曹試其才, 步騎射俱中, 乃下議于政府曰: “宰相之子, 其母雖賤, 已通仕路, 非宰相之子, 則例屬補充軍. 謹之雖能射, 其父收職牒, 與庶人無異, 遽授爵命, 無乃不可乎?” 僉曰: “若欲爵謹之, 則當先給孝昌職牒. 且與孝昌同罪者, 皆還受職牒, 獨孝昌未蒙特恩, 還給何如? 如此則謹之仕路, 自通矣.” 未幾有是命.”

17)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1437) 7월 6일 갑오, “幸東郊觀稼, 駐駕于普濟院北廣

왕은 대군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 자신의 도착 시점을 알렸을 것이고, 그녀는 종들을 부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녀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동대문을 나와 새로 지은 집에 이사를 온 이후 보지 못했던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상상된다. 이후 왕과 왕비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광평대군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참고로 광평대군 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광평대군의 가계도를 첨부한다.

Ⅲ. 廣平大君의 죽음과 靑孀의 佛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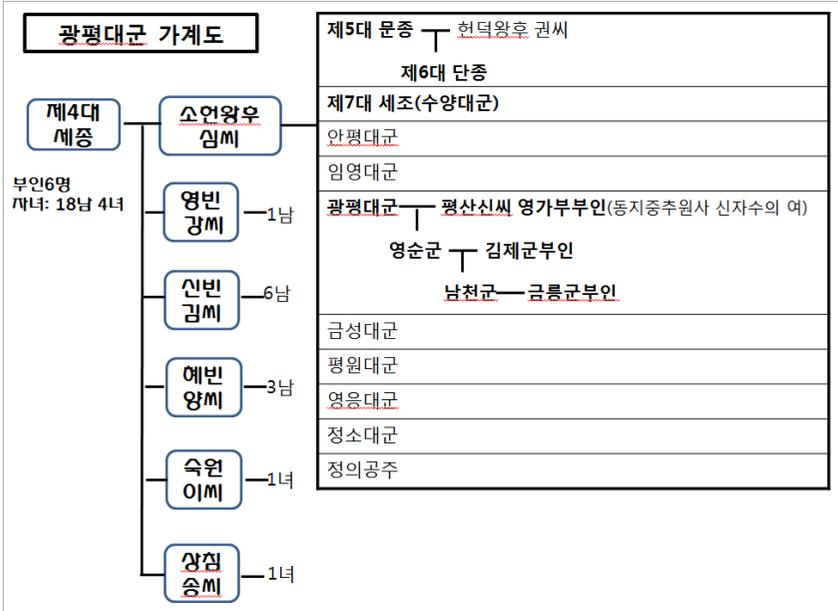
『세종실록』 권79, 세종 19년(1437) 11월 27일 기록을 보면 광평대군의 집에 사당이 들어섰다. 그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광평대군은 왕실 족보에 아들 없이 죽은 시할아버지의 이복동생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었다.¹⁸⁾

恭順公에게 楸城呂號를 追贈하고, 비로소 광평대군 이여의 집에 사당을 세우고 관원을 보내 致奠하였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은혜는 친족의 의를 돈독하게 하였고, 예는 후사를 세우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다. 경은 가까운 의친에 속했는데, 불행하게도 후사가 없었다. 외로운 혼이 어디에 의탁할까 생각함에, 내 마음이 슬퍼지도다. 古典의 기록을 상고하고 읍호를 추증하도록 하노라. 마침내 광평대군 여를 후사로 삼고, 이어서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약소한 의식을 올려, 이에 특별하게 도리를 갖추노라, 슬프다, 바라건대 영령이 있는 듯이 영구토록 제사 올리도록 하라.”¹⁹⁾

平大君新第.”

18)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1437) 6월 3일 신유, “敎曰: “恭順公 芳蕃, 昭悼公 芳碩, 俱以懿親, 不幸無嗣, 其以廣平大君 瓊爲芳蕃後, 錦城大君 瑜爲芳碩後, 令立廟奉祀.”

19) 『세종실록』 권79, 세종 19년(1437) 11월 27일 계축, “恭順公贈邑楸城, 始立祠宇于廣平大君 瓊家, 遣官致奠. 其敎書曰: 恩旣篤於展親, 禮莫重於立後. 惟卿屬尊懿戚, 不



[그림 1] 광평대군 가계도

恭順公은 李芳蕃(1381~1398)이다. 그는 태조 李成桂의 일곱째 왕자였다. 태조 계비 神德王后 강씨 소생으로 세종의 아버지인 李芳遠과 배가 달랐다. 태조 2년(1393)에 13세의 나이로 좌군절제사로 임명되었으며 한때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어머니 중전 강씨의 추천으로 세자로 내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趙浚, 鄭道傳 등 중신들은 그를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라고 반대하였고 결국 동북 아우 이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다. 태조 7년(1398)에 이복형 이방원이 주동이 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방원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방번에게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동시에 아버지 이성계에게도 그 역적모의를 고하지 않았으며 亂의 와중에 살해되었다. 그의 나이 18세였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

幸無嗣。念孤魂之奚托？諒予心之是惻。載稽古典，致贈邑號。乃以廣平大君 璵爲後，仍立祠宇，以奉祀事，俾奠非儀，庸示異數。慨英靈之如在，庶享祀於永世。”

한 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홀전(恤典, 구제지원금)을 追舉하고 공순공의 시호를 추증하였다. 아들 세종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왕실이라는 숲속은 무서운 곳이었다. 세자 책봉에 동복 아우 李芳碩에게 밀리고, 아버지 이성계와 이복형 이방원 사이의 전쟁에서 우직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한 사연에 대해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편의 언질로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제 겨우 12세가 된 그녀에게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제사 준비에 더 많은 마음의 하중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녀 또한 16년 후의 미래에 왕실 가족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어린 부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1443년 3월 1일 세종대왕은 왕비와 함께 온천을 갔다.

임금이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동함에,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君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 사람씩을 扈駕하게 하고, 광평대군 이여와 壽春君 李玟에게 궁을 지키게 한 후, 대군과 여러 군을 윤번으로 왕래하게 하였다. 이날 龍仁縣에 행차하시어 刀川邊에 머무르는데, 악공 15인이 저녁때부터 二鼓(밤 9시~11시 사이)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다. 이 행차에 道經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 마중 나가서 뵈었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²⁰⁾

광평대군은 부인 신씨에게 궁궐에서 여러 형과 윤번으로 숙직을 서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시어른인 국왕과 왕비가 온양온천에 가서 장기간 궁을 비우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온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해 말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인 1444년 7월 아들을

20)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1443) 3월 1일 병진朔, “上與王妃幸忠淸道 溫陽郡 溫井, 王世子從之. 大君諸君及議政府六曹臺諫各一員扈駕, 以廣平大君 璵、壽春君 玟守宮. 自後大君諸君輪次往來. 是日, 次龍仁縣 刀川邊, 伶人十五人奏樂自昏至二鼓. 是行, 道經守令, 皆於境上迎謁, 凡民觀瞻者, 填溢街路.”

출산했다. 永順君 李溥(1444~1470)이다. 왕실에 시집와서 자식을 낳은 그녀는 이제 의무를 다했다. 왕실과 친정인 신씨 집안의 경사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창진(천연두 혹은 마마)이 서울을 엄습했다.

임금께서 광평대군 이여가瘡疹을 앓기 때문에 연창군 안맹담의 집으로 옮기셨다.²¹⁾

1444년 12월 6일 남편인 광평대군은 창진을 앓았다. 그러자 시아버지 세종은 사위인 안맹담의 집으로 피신했다.

20세의 광평대군은 평소 강한 활을 당겨서 멀리 쏠 정도로 근력이 뛰어났고, 격구에도 능한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젊디젊은 광평대군은 그 뒷날인 12월 7일에 사망하고 만다.²²⁾

21)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1444) 12월 6일 신해, “上以廣平大君 璵患瘡疹, 移御延昌君 安孟聃第.”

22)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1444) 12월 7일 임자, “廣平大君 璵卒. 璵字煥之, 號明誠堂, 上之第五子也. 以洪熙乙巳五月壬申生, 宣德七年壬子正月, 封廣平大君. 自少力學, 通《孝經》、《小學》四書三經, 徧閱《文選》、李、杜、歐、蘇集, 尤長於《國語》、《左傳》, 至於音律算數, 亦極其妙, 善屬文, 書法亦妙. 挽強射遠, 又能擊毬. 上命總簡儀宗簿事, 綜理得體. 上追念撫安君無嗣, 命以爲後, 以主其祀. 璵患瘡疹, 上憂甚, 醫療多方, 竟莫能效, 至是卒, 兩宮震悼, 輟朝三日. 璵性度寬洪, 容姿豐美, 聰明孝悌. 雖奴隸僕從, 未嘗叱咤, 人皆愛之. 謚章懿, 敬慎高明章, 溫柔賢善懿. 一子溥. 初, 璵病劇, 上徹夜不寐, 及卒, 終日不御膳. 都承旨李承孫等啓曰: “上有宿疾, 哀慟過禮, 請進膳.” 上曰: “子當從之.” 然及暮但進粥少許而已. 命白波令常主喪, 以僉知中樞院事鄭陟·卞孝文、禮賓少尹閔瑗護喪事, 又命同副承旨李思招, 亦往監之. 凡沐浴斂殯之具, 皆官它之. 政府六曹上陳慰. 箋曰: “溫良夙德, 端爲宗室之英; 俊偉豐姿, 奄隔泉扃之秘. 哀纏宸極, 慟結輿情. 伏惟願寬聖懷之悲, 以答臣僚之望.”

광평대군의 죽은 원인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광평대군은 어릴 적에 관상을 보았는데 굵어 죽을 팔자라는 것이었다. 아버지 세종 임금은 내 아들이 어떻게 굵어 죽을 수가 있느냐며 적전을 많이 하사하였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광평대군은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 그 길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굵어죽었다. “廣平大君 璵少時, 相者言法應餓死 世宗曰子子豈有餓死之理 盡以東籍田賜之 遂移籍田于別墅 廣平後因食魚 爲魚骨梗喉 不食而卒.” 김성언 역주, 강효석 편저 『쉽게 풀어쓴 大東奇聞』(상), 국학자료원, 2001.

여(璵)가 창진(瘡疹)을 앓고 있었는데, 임금이 심히 근심하여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나 끝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죽으니, 임금과 중궁이 몹시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거두었다.²³⁾

문헌상으로는 광평대군의 창진 발병일이 12월 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록으로 보아 창진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아무도 광평대군이 죽으리라고는 예상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²⁴⁾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광평대군 부인 신씨는 갑자기 청상과부가 되었고, 불교의 세계에 들어섰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아버지 세종도 부처에 귀의했다.

1448년 세종은 문소전 서북 빈 땅에 內佛堂을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²⁵⁾ 이는 조정 신하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세종은

23)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1444) 12월 7일 임자, “璵患瘡疹, 上憂甚, 醫療多方, 竟莫能效, 至是卒, 兩宮震悼, 輟朝三日.”

24) William H. McNeil,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허정 역), 한울, 1992, 87쪽.
金珉秀. 「諺解痘瘡集要의 의과학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6쪽.
김성수 「朝鮮前期 痘瘡 流行과 瘡疹集」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6, 1호(통권 28호) 2010, 30쪽.

천연두는 현대 의학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으로서 열이 나고 약 2일 후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소포·농포의 단계를 거쳐 말라붙으면서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처음 작은 2mm 정도 작은 구진으로 시작된 발진은 1~3일 사이에 물집으로 진행한다. 이후 5~6일이 되면 물집들이 혼탁해져 膿疱期가 시작된다. 각 농포들은 크기가 커지면서 돌출하게 되고 농포의 중심이 배꼽모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며 고름이 터진다. 약 9일째가 되면 발진은 탈수되어 痂皮를 형성되는 건조기로 접어들고, 셋째 주 말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흉터를 남기게 된다. 이외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즉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숙주에서 숙주로 바로 감염되며 한번 감염되면 일생동안 면역력을 얻게 되어, 그 결과 대개 어린이들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토착화한다. 게다가 처음 접촉하는 집단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특히 건강기라고 할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항체 반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왕성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25)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1451) 4월 15일 계미 “上引見都承旨李季甸等曰: “外人皆言: ‘世宗至末年, 好佛.’ 然自經丙寅大故及廣平、平原連逝之後, 不堪悲怛, 權從俗禮,

세자에게 禪位할 뜻을 비치고,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집에 이어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로 내불당을 설치하고 그해 12월 경찬회를 5일 동안 설행하였다. 세종 31년(1449)에 간행된 舍利靈應記에 김수온이 내불당의 조성 경위와 경찬회 과정, 사리의 출현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불당 내에는 안평대군과 임영대군이 주관하여 만든 황금 삼존불을 안치하고 大慈庵 주지 信眉와 김수온에게 <三佛禮懺文>을 짓게 하고, 세종이 친히 <新聲>을 지었다고 한다. 세종의 親制新聲은 7곡의 악곡과 9편의 악장으로, 경찬회의 음성 공양에 악기를 잡은 자가 45명, 죽간자 2명, 노래하는 사람 10명, 舞童 10명을 수양대군이 악보를 가지고 인솔하였다고 한다. 이 법회에 광평대군 부인도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불당에서는 세종 31년(1449) 11월 세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藥師齋가 열렸고 세자의 병이 낫자 報功齋를 베풀기도 하였다.²⁶⁾

한편 19세의 청상과부 광평대군 부인도 운명의 빈 잔을 부처의 자비로 채우려 했다. 광평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 옆에 齋庵(견성암)을 창건하였다. 불사는 그녀가 불행에 맞서는 방법이었다. 그러다가 유학자 대신들의 반발을 샀다.

세종이 죽고 큰아들 문종이 즉위한 1년(1451) 5월 3일이다. 司憲掌令 金淡이 아뢰었다.

"신 등은 토당동의 불사를 듣지 못하였다가, 대사헌 安完慶이 사직함으로 인해 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절의 중을 잡아 와서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六典》에 '비록 喪을 당하여 薦亡하는 때라도 다만 水陸齋는 베풀되, 법석을 행하지는 못한다.'하였는데, 지금 광평대군의 부인이 까닭 없이 법석을 베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절의 중에게 물으면 법을 어긴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移文하여 추궁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現推할 수

修建佛宇，暫行薦拔。及於闕北，營建佛堂，此亦但繼先志而爲之，非創意也。世宗不尙佛教，予獨知之。今愚民妄謂：‘好佛’，剃髮爲僧者，殆至千、百，禁斷甚難。自今嚴立期限，限內現身者，俾納丁錢，給度牒。限內不首及私自剃髮者，依法科斷，或全家入居。予欲先使愚民，悉知此意，然後痛禁，命集賢殿，製教書”

26) 세종의 내불당에 대해서는 곽동화,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한성대박사는 문 2018, 17~18쪽.

없으니, 청컨대 잡아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사를 금지하는 것은 법에 정식 조항이 없으며, 또 이 일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필경 법을 어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날에 수양대군께서 용문산의 불사를 베풀 때에 부인도 갔으나 다만 농가에 머물고 절에 참배 오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바깥사람 누구인들 부인이 절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현재 토당사와 광평대군 부인이 있는 집이 매우 가깝습시다. 부인이 오랫동안 집에 있었으며 잇달아 불사 하였으니, 신 등은 '부인이 반드시 절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비록 절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수종 하는 부녀자들이 어찌 왕래하지 않았겠습니까? 僧人이 함부로 閭里를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금령이 있거니와, 과부의 집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금지해야 하는데, 이는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가령 부인이 분묘를 위하여 오래 그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에는 효자가 여막에 살되 喪制를 마치면 반드시 신주를 사당에 두고 때에 맞추어 享祀하는 것인데, 더구나 부인으로서 늘 절 곁에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위의 법석의 원인과 부인이 절에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모름지기 절의 중을 국문하여서 인심을 편안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이 절에 올라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 뒤에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절의 중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인에게 명하여 속히 서울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불사 베풀 것을 아는 데도 다시 추문 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불사가 오늘 이미 끝났으므로, 부인은 반드시 속히 서울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대저 종실에서 하는 일을 성상께서 다 아시겠으나, 그 사이에 법을 어기는 일을 어찌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절의 중을 국문한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결같이 법령에 따라 科罪하라.' 하였거니와, 이제 불사를 크게 벌여서 법을 범함이 막심하니, 청컨대 나라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사를 엄히 금함을 다 알게 하소서. 또 安完慶이 憲司의 長으로서 僧人을 통정한 일 또한 옳지 못하니, 청컨대 아울러 추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비록 옳으나, 선왕의 조정이 라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이 불사는 광평대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안군 부인의 기일이기 때문에 베풀 것이니, 추문할 수 없다." 하였다.²⁷⁾

27)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1451) 5월 3일 경자, “司憲掌令金淡啓: “臣等未聞土堂洞佛事, 因大司憲安完慶辭職, 然後乃知. 請拿寺僧, 來鞫之.” 上不允. 復啓曰: “《六典》: ‘雖遭喪薦亡之時, 只設水陸, 毋得行法席.’ 今廣平夫人, 無因設法席, 非也. 問其

몇 년 전 대사헌 安完慶의 族兄인 僧 竺昭가 현풍현에서 서울로 왔다. 안완경은 축소가 머물 곳을 광평대군 부인의 친정아버지인 신자수에게 부탁을 하여, 돌아간 사위 광평대군의 묘소 옆에 세워진 암자 齊庵에 주석하게 하였다.²⁸⁾ 위치는 현재 삼성동 선릉 부근인 이 암자(나중에 見性菴)는 광평대군 부인이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세운 원찰이었다.²⁹⁾ 그곳에서 주석하던 僧 竺昭가 토당동에서 法席을 베풀었다. 그 사실이 안완경의 귀에 들어갔다. 이 일로 그는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사임으로 토당동의 法席은 공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광평대군의 부인이 주도한 그 법석은 불법이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사헌장령 김담이 주장했다. 그러자 문종은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고 불사를 금지하는 것은 법에 정식 조항이 없다고 잘랐다. 문종은 불쌍한 청상과부 제수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김담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광평대군 부인의 집과 가까운 토당사에서 법석을 열었는데 부인이 그곳에 갔을 것이며, 과부인 그녀가

寺僧，則違法之事，必多。若移文推之，則雖的然之事，不能現推。請拿來以問。”上曰：“禁止佛事，法無正條，且此事予既知之，必無違法之事。”復啓曰：“前日首陽大君設龍門山佛事時，夫人亦往，但止農舍，不詣其寺。然外人，孰知其不上寺乎？今土堂寺與廣平夫人所在之第，甚邇。夫人長在其第，連作佛事，臣等以爲‘夫人必上寺也。’夫人雖不上寺，隨從婦女，其不往來乎？僧人毋得橫行閭里，自有禁令，寡婦之家，尤痛禁之，此非細故也。縱曰：‘夫人爲墳墓，長在其傍’，禮，孝子居廬，終制之後，則必置神主于祠堂，以時享祀，況以夫人，而常在寺傍，可乎？上項法席根因及夫人上寺與否，須鞫寺僧，以快人心。”上曰：“的知夫人上寺，然後推之，可也。”復啓曰：“寺僧，不可不鞫，且命夫人，速還京都。”上曰：“予既知其設佛事，復令推問，可乎？佛事今日已畢，夫人必速還京。”復啓曰：“大抵宗室所爲，上皆知之，然其間違法之事，安能悉知？若鞫寺僧，則可知其實。嘗下教云：‘如有犯法之人，一依法令科罪’，今大張佛事，犯法莫甚。請須鞫問，使國人，皆知嚴禁佛事。又安完慶，以憲司之長，通請僧人之事，亦爲不可，請并劾之。”上曰：“若等之言，雖善，然在先王之朝，則必不敢開口，且此佛事，非爲廣平，乃因撫安君夫人忌日而設，不可推也。”

- 28)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1451) 4월 29일 정유, “大司憲安完慶上言: “臣族兄僧竺昭, 自玄風縣來京, 臣言於判事申自守, 令寓居廣平大君齋庵, 今本庵設法席事, 露. 臣以無狀, 殊失風憲之體, 乞治臣罪罷職.” 不允.”
- 29) 강호선, 「조선전기 왕실원찰 건성암의 조성과정」 『서울학연구』 59, 2015, 1~35 쪽.

僧들과 가까이 한 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광평대군 부인이 불사를 크게 벌여서 법을 범했으니 이를 추핵하여 나라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사를 엄히 금함을 다 알게 하라고 하였다. 또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안완경이 憲司의 長으로서 僧人이 머물 곳을 사사로이 신자수에게 청탁한 일도 아울러 추핵하라고 했다.

신하가 법대로 하자고 따지자 문종은 더 참을 수 없었는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말은 비록 좋으나, 先王 세종께서 살아계셨다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그녀의 佛寺에 施納에 관한 비판과 처벌에 대한 논의는 성종 21년까지 계속되었다.

IV. 癸酉靖難 前夜 溫泉治病 旅行

1452년 5월 14일 광평대군 부인을 옹호하던 문종이 승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떴다. 토당사 법석 문제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부인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람을 잃고 병이 들었다. 치병이 되지 않자 그녀는 시어른들이 가던 그 온천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듬해인 1453년 봄이 오고 그녀는 서울을 떠났던 것 같다. 충청도의 온양에 도착해서 그녀가 入浴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했다고 하더라도 효험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녀의 집안 집사들 가운데 金良貴·周陽復 등이 동래온천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했다.³⁰⁾

동래 온천이 효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동래온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권3 신문왕 3년(683년) 영취산조에 '재상 충원공이 동래온천에서 목욕했다'에 나타난다.³¹⁾ 나아가 『신증동국여

30)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2월 4일 을유, “釋充軍丁善奇、金良貴、周陽復。初，廣平大君 璵夫人申氏擅往東萊溫泉，皆良貴等從與之也。議政府啓，令憲府推劾充軍，至是，以經赦釋之。議政府啓曰：“良貴等奸邪，毋令再幹璵家事。” 命召夫人父自守語之。”

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신라시대부터 동래온천에서 목욕했음과 치병에 효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현(1439~1504년)도 『慵齋叢話』에 동래온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6도마다 모두 溫井이 있으나, 경기·전라도만 없다. …동래 온천이 가장 좋으며, 마치 비단결 같은 샘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데, 물을 끌어들여 곡(斛)에다 받아둔다. 따뜻한 것이 끓는 것과 같아서 마실 수도 있고 데울 수도 있다. 일본인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가려 하므로, 얼룩 옷을 입은 사람들의 왕래가 번번하여 州縣은 그 괴로움이 많았다.³²⁾³³⁾

동래온천의 治病力을 널리 알린 것은 왜인들이었다. 왜인들이 온천을 좋아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³⁴⁾ 무엇보다 누대에 걸쳐 온천을 해왔던 그들은 특정 온천의 치병 여부에 대해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따라 아뢰기를,

"乃而浦에 정박했던 왜인들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는 모두 동래 온정에서 목욕하는 까닭에, 길을 돌아서 역으로 달리게 됨으로 人馬가 모두 시달립니다. 이후로는 내이포에 정박한 왜인들은 영산 온정에서 목욕하게 하고, 부산 포에 정박한 왜인은 東萊溫井에 목욕하도록 하여 길을 돌아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⁵⁾

31) 『삼국유사』 권3 신문왕 3년(683년) 영취사조, “靈鷲寺寺中古記云. 新羅真骨第三十一主神文王代永淳二年癸未, 宰相忠元公叢山國(即東萊縣, 亦名萊山國)溫井沐浴.”

32) 『용재총화』 9-2 「온천」조, “今我國六道. 皆有溫井. 而惟京畿全羅道無之. …東萊溫泉最好, 有泉如匹練. 從地湧出, 引水作斛. 其暖如湯可飲, 亦可煖酒. 倭人來朝者必求浴, 班衣往來充斥, 州縣不勝其苦矣.”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산천」조와 「동래부지산천」조에 '온천은 동래부의 북쪽 5리에 있으며, 그 열이 달걀을 익힐 만하고 병든 사람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금방 나아, 신라시대에는 왕이 여러 번 이곳에 행차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34)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지음, 『중세 왜인의 세계』(이영 옮김) 小花, 2003, 92~93쪽.

35)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1438) 3월 1일 을유, “議政府據禮曹呈啓: “乃而浦到泊上京還歸倭人等, 皆浴於東萊溫井, 故枉道馳驛, 人馬俱困. 今後乃而浦客人則浴於靈山溫井; 富山浦客人則浴於東萊溫井, 以除枉道之弊.” 從之.”

乃而浦는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鎭海區 동쪽의 항구인 熊川(제포)이다. 조선 초기에 왜인의 入港場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통교자가 급증하자 수용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1407년 순수한 무역을 위한 興利倭船이 도착하여 정박하는 浦所를 경상좌우도 都萬戶가 있는 곳으로 한정하였다. 좌도 도만호는 동래현 관내의 부산포, 우도 도만호는 김해부 관내의 내이포(제포)에 있었다. 삼포의 원류는 여기서 시작된다.³⁶⁾

그런데 乃而浦에 배를 정박시킨 왜인들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는 모두 동래온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길을 돌아서 간다고 한다. 내이포의 왜인이 上京하는 길은 진해-창원-창녕(영산)-성주-김천-추풍령-옥천-청주-죽산-용인-서울이다.³⁷⁾ 우로 중로 좌로 가운데 그들은 우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려갈 때도 우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풍령을 넘어 성주에 도착한 후 창녕으로 내려가지 않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구-영천-경주-모화-울산-동래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산포에 배를 정박시킨 왜인들도 이 길을 택했던 것이 틀림이 없다. 왜인들이 모두 동래온천으로 향하자 문제가 생겼고, 1438년 조선 조정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내이포의 왜인들은 영산온천을 사용하게 했고, 부산포의 왜인은 동래온천을 사용하게 했다.

세종 26년 11월1일 대마도에서 서신이 도착했다. 왜인들이 조선조정에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宗盛家가 보내 온 승 光俊이 예조에 글을 올리어 6가지 조목을 정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① 1년 동안 왕래하는 배의 수효를 정해 줄 것.	② 기근 시 곡식을 줄 것.
③ 모시와 표범가죽을 줄 것.	④ 孤草島에서 낚시하는 것을 허락할 것.
⑤ 수하 사람들을 富山浦에 몸 붙여 살게 할 것.	⑥ 동래 온천 목욕을 허가하여 줄 것

36)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앞의 책, 117~118쪽.

37)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앞의 책, 68쪽 참조.

예조와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黃喜·좌참찬 權躡·우참찬 李叔時 등이 의논하기를, "목욕하는 것은 들어주어도 괜찮으나, 그 외에는 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³⁸⁾

6개의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왜인에게 허락한 것은 왜인들의 동래온천 입욕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합법화되었다. 서신을 보내온 宗盛家는 對馬島主 宗氏 집안의 사람이다. 1450년 6월 29일 그는 부산에 도착하자 바로 동래온천으로 향했다.

대마주 왜인 종성가가 동래온천에서 목욕하므로, 집현전 수찬 이극감을 보내어 위로하고, 약과 안마·의복·갓, 가죽신과 쌀 10석, 잡채화석 5장, 호피3령, 소주 30병, 청주 50병, 꿀 3두, 과일 4각, 건어 5백 미와 백세면주·면포·저포·흑마포 각각 5필을 하사하였다.³⁹⁾

조선 정부는 왜인의 동래온천 입욕을 허락하였고, 그로부터 왜인들은 지속해서 그곳을 찾았다.

왜국에서도 동래의 온천이 치병의 효과에 관한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1490) 11월 16일 甲午 조에 일본국 대마주태수 宗貞國이 國續을 특사로 禮曹에 보내 토산물을 바치면서 올린 書契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동래온천은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낫은 듯합니다. 30~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詔命을 내려 승낙해 주셨으니, 더할 수 없이 다행입니다.

38)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1444) 11월 1일 병자, “先是, 宗盛家所遣僧光俊致書 禮曹, 凡六條, 請定一年往來船隻之數, 一也. 因饑饉請穀, 二也. 請苧布及豹皮, 三也. (淸) [請] 孤草島釣魚, 四也. 請令其下人戶寓居富山浦, 五也. 請於東萊沐浴, 六也. 命禮曹, 與政府議之. 領議政黃喜, 左參贊權躡, 右參贊李叔時等議: "沐浴, 可從請, 其餘宜皆不許.

39)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1450) 6월 29일 신축, “對馬州倭宗盛家, 浴於東萊溫泉. 遣集賢殿修撰李克堪宣慰, 賜藥餌, 鞍馬, 衣服, 笠靴, 米十石, 綵花席五張, 虎皮三領, 燒酒三十瓶, 淸酒五十瓶, 蜜三斗, 果四角, 乾魚五百尾, 白細·綿紬·綿布·苧布黑麻布各五匹.”

大刀 2자루, 練 2필, 靑毛馬 1필을 진상합니다."라고 하였다.⁴⁰⁾

대마도주 宗貞國은 동래온천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치유된 듯하다. 라고 했다. 짧지만 강렬한 표현이다. 30일에서 50일간 온천을 할 수 있도록 조선에 허락을 받은 宗貞國은 입욕의 대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大刀 2자루, 練 2필, 靑毛馬 1필을 냈다.

이 같은 기록들을 통해 왜인들이 동래온천을 再生의 샘으로 여겼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의 온도와 용해된 광물 성분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대한 침투압이 달라지는데, 왜인들은 동래온천이 타 온천보다 온도가 높고 용해된 광물의 성분이 많아 인체의 세포액보다도 높은 침투압을 가진 高張泉이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감지했던 것 같다.

병에 걸린 어떤 조선의 관리도 소문을 듣고 治病을 위해 그곳을 찾았다.

처음, 문종이 세조에게 명하여 병서의 音註를 편찬하게 하니, 교리 權擘이 참여 하여 도왔다. 권람이 뒤에 병으로 사직하고, 동래온정에 가서 목욕하고 돌아오니, 궁지기 한명회가 권람을 방문하고 인하여 이르기를...⁴¹⁾

문종 때인 1452년 7월 23일 병으로 사직했던 권람이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35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450년(문종 즉위년)에 향시와 會試에서 모두 장원으로 급제했고, 殿試에서 4등이 되었다. 그해 사헌부의 감찰이 되었고, 이듬해 집현전 교리로서 수양대군과 함께 『陣設』을 편찬하는 데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수양대군과 가까워졌다.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권력은 김종서·황보인 등 대신들의 손에 들어가고 安平大君이 대신들과 결탁해 세력을 키워갔다. 이에 불안을 느낀 수양대군이 동지를 규합하고 있을 때, 한명회의 부탁을 받

40)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1490) 11월 16일 갑오, “日本國 對馬州太守宗貞國, 特遣國續, 來獻土宜. 其書曰:…략…東萊溫湯, 望之疾已痼枯. 不得三五十旬者, 難愈, 詔許及之者萬幸. 進上大刀二把, 練二匹, 靑毛馬一匹.”

41)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1452) 7월 23일 갑인, “初, 文宗命世祖, 撰兵書音註. 校理權擘參侍. 擘, 後以病辭職, 往浴東萊溫井, 及還, 宮直韓明澮訪擘, 因謂曰…”

고 수양대군에게 접근해 정변을 모의했다. 그가 동래온천에서 돌아와 역적모의를 시작한 것을 보면 치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권45, 세조 14년(1468) 2월 2일 계사 조를 보면, 繕工錄事 全思禮가 온천욕의 치병 효과를 세조에게 아뢰고 있다.

"신이 살짝 듣건대, 온천은 神祇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 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니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 날을 熏浸하고 휴식하고 調攝하면, 혈액이 순하게 통하고 元氣가 충분히 소생하여, 깊어져 가는 병[痼癢]이 저절로 없어지고 惡疾이 나오니, 사람에게 이 이익이 있음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경기 내에서 널리 온천을 구하였으나 결국 얻을 수가 없었으니, 성상께서도 軫慮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신민이 한가지로 근심하였습니다. 本道[忠清道] 온양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두 번 묵어서 이르며, 길도 평이하여 다니기에 어렵지 않고, 또 물의 성질이 적당하여 잠기어 목욕하기에 편리하고, 여러 다른 물들에 비하여 효험을 얻기가 매우 신속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금같이 소중한 아들은 마루 끝에 앉히지 아니하고, 그 관계되는 것을 지극히 중히 한다.' 하였는데, 하물며 전하의 일신은 종묘·사직이 의탁한 바이며, 신민이 우러르는 분이신데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萬幾의 사이에 흑和氣를 어기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즉시 조섭하고 치료해야 할 것이니, 농사를 방해한다고 하여 사양하심은 옳지 않으며,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하여 밀치심도 옳지 않다고 신의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절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속언에 이르기를, '1일을 목욕하면 3일을 휴식한 것과 같고, 2일을 목욕하면 6일을 휴식한 것과 같 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목은 병이 제거될 것이고, 風症에도 해로움이 없으니, 진실로 이처럼 하지 않으면 원기가 충분치 못하여 도리어 풍증이 상하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하는 날을 오래 하고 휴식도 또한 오래 하면 목욕의 효험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²⁾

42) 『세조실록』 권45, 세조 14년(1468) 2월 2일 계사, “木川人前繕工錄事全思禮上書曰: 臣竊聞, 溫泉者神祇所暖, 主療諸疾者也. 故其出於人間, 爲尤重矣. 熏浸累日, 休息調保, 則血脈和通, 元氣充蘇, 痼癢自去, 疾疹痊愈, 其有益於人, 可勝言哉? 嚮者畿甸之內, 廣求溫泉, 竟未能得, 非但聖上之軫慮, 乃一國臣民, 所共憾也. 本道溫陽, 距京不遠, 再宿而至, 道途平易, 不難於行. 且水性適宜, 浸浴便易, 比諸他水, 得効甚速矣. 古人云: “千金之子, 坐不垂堂, 以其所係者至重也.” 況殿下一身, 宗社之所托, 臣民之所仰者乎? 萬幾之間, 或有違和, 當即調治, 不可辭以妨農, 不可托以勞民, 臣之愚心, 常

일정 기간 동안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기를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元氣가 살아나(저항력이 증대되어) 질병이 스스로 치료된다고 한다. 1일 온천욕 하면 3일을 휴식하는 것과 같고, 2일이면 6일일 쉬는 것과 같다고 한다.

온천을 하면 온열효과가 있다. ‘온열효과’라고 하는 것은 온천의 따스한 온기(열)에 의한 효과이다. 거의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목욕물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진정하는 작용을 하여 신경계와 순환기계의 흥분을 억누르는 작용을 한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목욕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신경계와 순환기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온천물에 함유된 광물 성분에 의한 효과가 있다. 온천수에 녹아있는 여러 광물은 피부를 통해 육체 내에 흡수되어 약리작용을 한다.⁴³⁾

광평대군 부인이 동래로 향한 것도 이러한 온천의 치병 효과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온양에서 그녀는 청주로 갔고, 지금의 대전을 지나 옥천에 도착한 후 추풍령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김천-구미-대구-영천-경주-모화-울산 등을 거쳐 동래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녀는 동래의 어디에 머물렀다는 말인가. 몇 달 동안 온천을 지속하는데 거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조가 승정원에 傳旨하기를, "지금 들건대, 충청도가 농사에 실패하였다고 하는데, 오는 봄에 온양에 행차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 高城이나 황해도 白川·海州 등의 온정에 거동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이 좋겠는가?"하니, 승정원과 병조 판서 尹子雲이 대답하기를, "온양의屋舍는 완전히 갖추어져 지금 다만 수리만 하면 됩니다. 만약 고성·배천(白川)·해주라면 옥사가 없음으로 그때까지 창건하지 못할까 걱정되니, 온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失農하였다고 하나 행차하시는 모든 일이 지극히 간략하니, 어찌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傳旨하기를, "세 온정은 내가 또한 후일에 갈 것이니, 아울러 옥사를 수리하

懷切切者也。諺曰：“一日沐浴，則三日休息；二日沐浴，則六日休息。”如此則宿疾可除，而無害於風，苟不如是，元氣未充，而反有傷風之患也。沐浴日久，而休息亦久，則沐浴之效可期……”

43) 遠藤麻衣, 「동래온천에 관한 연구」, 韓國海洋大 석사논문 2008, 14~15쪽.

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동래가 비록 멀지만, 오히려 갈 만하니, 또한 아울러 수리하라." 하였다.

윤자운이 아뢰기를, "동래는 臣이 직접 보았는데, 관사가 완전하고 좋으니, 비록 고쳐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⁴⁴⁾

1464년 전국 온천의 屋舍에 대해 병조판서 윤자운이 세조에게 브리핑을 했다.⁴⁵⁾ 세조는 온양온천 지역에 흥년이 들어 자신의 행차로 백성들이 힘들까 봐 강원도 고성이나 황해도 배천·해주 등의 온정에 거동하고자 했다. 그러자 강원도나 황해도 온천에는 屋舍 자체가 없어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온양의 옥사는 屋舍가 온전히 갖추어져 약간의 수리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이는 조선왕실 사람들이 온양온천에 자주 행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⁴⁶⁾

동래온천이 멀지만, 오히려 갈 만하다고 한 세조의 언급은 그곳의 치병 효험에 대해 들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조가 흥년이 든 온양을 배제하고 동래온천행 의도를 내비치자 동래온천의 관사는 완전한 데다 좋다고 한다. 당장 거동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윤자운은 그곳을 직접 가서 보았다고 했다.⁴⁷⁾

44)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1464) 12월 16일 을미, “傳于承政院曰: "今聞忠淸道失農, 來春溫陽行幸, 不便於心, 故欲幸江原道 高城、黃海道 白川、海州等溫井, 何處可也?" 承政院及兵曹判書尹子雲對曰: "溫陽屋舍完具, 今但修之而已. 若高城、白川、海州則無屋宇, 恐未及創建, 不若溫陽之爲愈也. 雖云失農, 行幸凡事至簡, 何害於民?" 又傳曰: "所謂三溫井, 予亦後日當往, 不可不並修屋舍. 且東萊雖遠, 猶可往, 亦並修治." 尹子雲啓: "東萊則臣親見之, 館舍完好, 雖不改營, 卽今可幸矣.”

45) 윤자운은 1438년(세종 20) 진사가 되고, 1444년(세종 26)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집현전 부수찬·이조 좌랑·사간원 좌헌납, 응교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僚屬으로 활약하였다.

46) 한경수, 「우리나라 온천 및 온천욕의 역사」 『관광연구』 27-5, 2012, 571쪽 표 참조.

47)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 功臣이 되어 승정원 동부승지·도승지에 올랐다가 1460년(세조 6) 祖母喪으로 일시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했다. 사직을 허락받지 못했으나 이때 말미를 얻어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가 동래 온천에 들린 것은 이때 즈음이 아닌가 한다.(『세조실록』 권22, 세조 6년(1460) 윤11월 18일 경신, “起〔復〕 仁壽府尹尹子雲上狀辭職曰: "臣幼養于祖母, 臣父與祖父皆早世. 去五月祖母又辭世, 臣方代喪居殯. 特命起復, 差奏聞使赴京, 其時事急日迫, 未假辭免.”

1453년 4월 말까지 광평대군 부인 일행은 東萊館舍에 유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서울에서 소식이 왔다.

단종이 경상도 관찰사 李崇之에게 諭示하기를,

"광평대군 부인이 동래온정에서 목욕하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비단 여러 고을에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왜인으로서 목욕하는 자가 다수 머물러 있으니, 폐단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경이 독촉하여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⁴⁸⁾

1453년 4월 24일 경상도 관찰사 이승지가 직접 동래온천으로 와서 광평대군 부인을 찾았다. 이승지는 지금 주상(단종)이 부인을 소환하였으니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한 국왕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고, 그녀는 동래를 떠난 1개월 후 서울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와중에 조정에서 나왔던 이런 저런 말을 곱씹었을 수도 있다. 조정 대신들이 그녀를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推覈할 터였다.⁴⁹⁾

1453년 6월 12일이었다. 어려울 때 수양대군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 주었다. 대군은 단종을 만나 광평대군 부인을 憲府에서 추핵받은 너무 심한 일이라고 했다. 수양대군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에 광평대군 부인이 먼 길을 가서 여러 고을에 폐단을 일으키고 절에 올라간

今使事已完, 願從情禮. 不允.") 그렇지 않다면 1461년 그가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도순찰사를 겸직할 때일 수도 있다.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1461) 5월 12일 신해, "諭京畿、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尹子雲曰: "今年徙民毋過三百戶, 并審同封事目."

48)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4월 24일 신해, "諭慶尙道觀察使李崇之曰: 廣平大君夫人浴東萊溫井, 至今未還, 非徒諸邑有弊, 且倭人沐浴者數多停留, 弊亦不小, 卿可促令還京"

49)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6월 13일 무술, "舍人羅洪緒將堂上議啓曰: "世宗大王嘗曰: '凡民家, 女婿見其妻母, 友婿相見其妻, 此何風俗耶? 甚可怪也.' 宮禁男女之別, 其謹嚴至矣. 東萊溫井, 非特遠地, 乃倭人群浴之處. 今廣平夫人遠歸沐浴, 恐倭人知之, 喧傳彼土, 故臣等啓請鞫問. 今雖窮推, 豈可加罪於夫人? 姑以當時所鞠科斷爲便. 朴信誠事, 宜從憲府之言." 皆從之."

일을 憲府에 명하여 추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정에서 목욕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는 바이니 마땅히 이를 국문하여야 하지만, 절에 오른 일과 여러 고을에 폐단을 일으킨 일은 이를 말하는 자가 없었고, 또 증거가 없는데도 헌부에서 억측하여 생각하기를, ‘반드시 폐단을 일으켰을 것이고, 반드시 절에 올라갔을 것이다.’ 하고, 끝까지 조사하였는데, 이것은 風聞公事인 듯합니다. 풍문 공사를 금지하는 것이 肅甲[법률]에 나타나 있는데, 유독 광평대군 부인에게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성인은 너무 심한 짓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헌부에서 추핵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폐단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일개 朝官이 본향에 돌아가더라도 수령이 반드시 서로 방문하는데, 하물며 대군 부인이 지나가는 데 감히 모르는 채하겠습니까? 여러 고을에서 支應한 것은 진실로 큰 죄가 아닙니다. 또 듣건대, 부인이 병을 얻은 지 이미 오래여서, 지난밤에는 거의 절명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고, 伴人 정선기도 또한 訊杖으로 濱死 상태라 하는데, 死罪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처럼 강제로 추핵하는 것이 어찌 도의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부인이 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변고가 있게 된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신이 지금 구구하게 아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종께서 광평대군이 졸하여 애통해하실 즈음에 신에게 명하기를, ‘永順君의 생활은 네가 마땅히 조치하고,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인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영순군은 장차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청컨대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다.⁵⁰⁾

수양대군의 변호를 통해 적지 않은 정보가 나온다. 그녀 일행이 각읍을 지나올 때 수령들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각 읍에서 광평대군의 부인을 모른 채하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폐단이라고 부르기

50)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6월 12일 정유, “世祖(首陽大君)啓曰: “前以廣平大君夫人往遠道, 作弊於諸邑, 及上寺事, 命憲府推鞠. 然溫泉沐浴則衆所共知, 宜當鞠之; 上寺事及諸邑作弊事, 既無言之者, 又無證驗, 而憲府臆意以爲, 必作弊, 必上寺, 而窮推, 此似風聞. 風聞之禁, 著在令甲, 獨施之於廣平夫人, 不可也. 《傳》曰: ‘聖人不爲己甚.’ 憲府所推, 無乃己甚乎? 儻曰 ‘作弊.’ 一朝官歸于本鄉, 則守令必相訪焉, 況大君夫人經過, 而敢愬然乎? 諸邑支應, 固非大罪. 且聞, 夫人得病已久, 昨夜幾絕復蘇, 伴人丁善奇亦訊杖濱死, 非係干死如此強推, 於義何如? 若夫人因此傷心, 以至有故, 則國家必悔之矣. 臣今區區啓之者, 無他, 世宗當廣平之卒, 哀慟之際, 命臣曰: ‘永順君生理, 汝當措置, 勿使予知.’ 今夫人有故, 則永順將何怙恃乎? 請議諸大臣.” 卽令議于議政府.”

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인이 병을 얻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동래온천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외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변호하고 있다.

서울-부산을 왕복한 그녀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대개 지금 경부고속도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일행을 支持하는 비용이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1750년 영조는 자신의 온천 거동 때 役을 한 畿湖 두 道의 백성들에게 쌀 1천 7백 석을 지급했다.⁵¹⁾

그녀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자 동래온천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녀의 집사장으로 보이는 수행원 정선기가 의금부에 소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문을 당하고 곤장을 맞아 거의 죽은 상태이고, 광평대군 부인이 병을 얻은 지 오래여서 절명 상태에까지 갔다고 한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만약 부인이 현부의 추책을 받아 마음을 상해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더 큰 일이 될 것이라 했다. 세종이 직접 키우기도 했던 어린 왕손 영순군의 어머니에게 변고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종의 유지를 밝혔다. 광평대군이 졸하자 자신 수양대군에게 영순군의 미래를 직접 부탁하였다고 했다. 이는 다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종이 영순군[溥]이 어려서 孤子가 된 것을 불쌍히 여기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광평이 불행히 일찍 죽었으니, 내가 심히 슬퍼한다. 다행히 遺嗣가 있는데 포대기에서 고고히 우니 더욱더 불쌍하다. 녹봉과 벼슬을 친아들의 예와 똑같이 하라." 하고, 나이 5세가 되도록 궁중에서 길렀다. 일찍이 문종·세조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때에도 또한 마땅히 나의 뜻을 본받아 이 아이를 어루만지고 보살피어 중시에 변함이 없게 하라."⁵²⁾

51) 『영조실록』 권72, 영조 26년(1750) 9월 30일 기사, “賜米七百石于畿、湖兩道, 以補溫幸時役民之費. 先是上軫念幸行時兩道民弊, 特給米一千石, 畿伯柳復明奏曰: “今番之役, 皆令田夫治道, 不必給米, 其在惜費之道, 當還納矣.” 上曰: “雖以田夫治道, 橋梁材木, 不出於民耶?” 命給七百石, 飭本道, 令均給道路、橋梁修治之民.”

52) 『성종실록』 권4, 성종 1년(1470) 4월 1일 기유, “永順君 溥卒, 輟朝弔祭禮葬如例. 溥, 廣平大君 璵之子, 正統甲子七月生, 是年, 璵卒. 世宗哀其幼孤, 傳旨議政府曰: “廣

수양대군의 광평대군 부인에 대한 변호는 그녀를 괴롭힌 당상관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정확히 4개월 후인 10월 10일 수양대군은 癸酉靖難을 일으킨다. 당상관들 대부분이 여기서 척살되었다. 그날 수양대군 김중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하여 그와 그의 두 아들을 때려죽였다. 이 사변 직후에 수양대군은 김중서가 모반하였으므로 주륙하였는데, 사변이 한순간에 일어나 주상에게 보고할 틈이 없었다고 端宗에게 사후 보고하였으며, 곧이어 왕명이라고 속여 증신을 소집한 뒤, 사전의 계획에 따라 황보인, 이조판서 趙克寬, 찬성 李穡 등을 궐문에서 주살하였으며, 좌의정 鄭策과 조극관의 동생인 趙遂良 등을 귀양 보냈다가 賜死했다. 이어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이 황보인·김중서 등과 한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단종에게 보고하고 강화도로 귀양 보냈다가 후에 죽음을 내렸다.

수양대군은 10월 10일의 정변으로 반대파를 제거한 후 의정부 영사와 이조·병조 판서, 內外兵馬都統使 등을 겸직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광평대군 부인 신 씨를 비방하던 자들이 한꺼번에 도살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그녀의 아들 영순군도 세조의 보호 아래 출세 가도를 달렸다.

1455년 영순군은 昭德大夫가 되었고, 1459년 興德大夫로 승진하였다. 세조는 아버지 세종이 남긴 유연을 받들어 영순군을 항상 곁에 두고 왕명을 전달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일을 위임했다. 1466년 그가 登俊試에 합격하니, 세조가 試券(시험지)을 가져다 보고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 영순군은 1467년 李施愛의 난 평정 후 精忠敵愾功臣에 임명되었다. 1468년 세조가 온양에 거둥하여 선비를 뽑는데 영순군이 重試 제1인에 뽑혔다. 서울로 돌아와 환궁한 세조와 왕비는 영순군이 기거하는 광평대군 저택에 직접 가서 쌀 50석을 하사하였다.⁵³⁾

平不幸夭折，予甚悲之。幸有遺嗣，呱呱襁褓，尤可憐憫。其俸賜爵秩，一視親子之例。”
 年五歲，育于宮中。嘗囑文宗、世祖曰：“汝等異時亦當體予意，撫視此兒，無替終始。”
 53) 『성종실록』 권4, 성종 1년(1470) 4월 1일 기유, “…及年八歲，授嘉德，封永順君；景泰乙亥，加昭德；天順己卯，陞興德。(世宗) [世祖] 深念世宗遺意，常令侍左右，凡出

V. 世祖의 즉위와 왕족들의 東萊溫川行

세조가 즉위한 이후 광평대군부인 신 씨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불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세조 집권 후 행해진 광평대군 부인의 대표적 인 佛事 가운데 하나를 보자. 1464년(세조 10) 4월 14일 見性庵(현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법회가 있었다. 그녀는 세종과 소헌왕후, 무안대군 부인 왕 씨, 광평대군이 열반을 얻어 극락에 오르기를 발원하면서 50명의 비구를 초청하고 圓通智大師를 講主로 청하여 法華道場을 열었다. 광평대군의 동복형제인 정의공주, 임영대군 내외, 영웅대군 내외가 大施主로 입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하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법회가 열리자 가물던 하늘에 비가 내리고 기상이 자주 변하는 등 상서로운 기운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오에 범패가 연주되자 불단 앞 탁자 위에서 광채가 나더니 舍利가 58개로 나뉘는 이적이 있었다. 법화 도량을 마치고 여름 결제를 바로 시작했는데, 결제를 해제하던 7월 15일 百終에 우란분재를 크게 설행했더니 불단 앞에 모셔두었던 사리가 또다시 나뉘어 하안거를 전후로 두 차례의 사리 분신이 있었다. 이에 광평대군 부인이 사리분신을 세조에게 고하자, 세조가 이를 경사스럽게 여겨 사리를 경복궁 舍元殿에 봉안하였다가 다시 견성암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⁵⁴⁾

한편 과거 그녀가 찾아갔다가 문제화되었던 동래온천을 왕실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에게 諭示하기를, "양녕대군 李裨가 동래

納之命, 勸覈之務, 率多委之. 成化丙戌, 中登俊試, 世祖命取試券覽之, 大加稱賞. 丁亥, 平李施愛, 溥以出納聖算, 策功, 賜精忠敵愾功臣號, 陞顯祿. 戊子, 世祖幸溫陽取士, 溥擢重試第一人, 及還宮, 兩殿幸其第, 賜米五十碩. 己丑, 睿宗誅南怡, 溥亦與有功, 賜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號. 至是卒, 年二十七. 諡曰 '恭昭': 敬順事上, 恭; 昭德有勞, 昭"

54) 金守溫, 『拭疣集』 권2, 「見性菴靈應記」 참고.
강호선, 앞의 논문, 9~10쪽.

온정에 가서 목욕을 하니, 후하게 대접하고 한 차례 賜宴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
다.⁵⁵⁾

1459년 8월 22일 세조가 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동래온정에 가는 자신의 伯父인 양녕대군을 후대하라고 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양녕대군이 지나갈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각 읍의 수령들은 그를 후하게 영접하고 酒宴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라도 관찰사에게 세조가 유시한 것은 무엇인가? 1459년 8월 24일 右獻納 申末舟가 ‘양녕대군에 대한 우대’에 대해 반대하고 나왔다.

우헌납 신말주가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가 경상도 동래의 온정에 가서 목욕했다. 그런데 또한 전라도에 가서 그 딸을 보려고 하니, 목욕하고 병을 치료했으면 그만인데 길을 돌려 즐겁게 놀면서 州·郡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유숙하는 고을에 才人과 白丁을 뽑아 주도록 명하시어 임의대로 짐승을 사냥하게 하였습니다. 才人과 白丁 또한 군졸인데 왕자가 군졸을 뽑는 폐단이 점점 커져서는 안 됩니다.” 하니, 세조가 전교하기를, “이미 길을 떠났으니, 중지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⁵⁶⁾

양녕대군이 동래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가 도중에 주·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냥을 하고 또한 전라도에 살고 있는 그의 딸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주·군에 민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 보아 양녕대군은 이미 세조에게 전라도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래온천에서 치병을 하고 기력을 회복한 양녕대군이 주·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냥까지 할 터였다.

1466년 1월 12일 세조는 동생인 임영대군 李瑒가 동래온천에 가므로

55)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1459) 8월 22일 신미, “諭京畿、忠淸、慶尙、全羅道觀察使曰: “讓寧大君 視往浴東萊溫泉, 厚待之, 一次設賜宴”

56)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1459) 8월 24일 계유, “右獻納申末舟啓: “讓寧大君 視就浴慶尙道 東萊溫泉, 而又欲往全羅見其女子. 沐浴治病則已矣, 不宜枉路遨遊以煩州郡. 且命於留宿之官抄給才人、白丁, 任情獵禽, 才人、白丁亦軍卒也, 王子抄軍, 漸不可長.” 傳曰: “業已發行, 不可中止.…”

경기도·충청도·경상도 관찰사와 중앙의 병조에게 그의 보필을 유지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임영대군의 행차에 수령이 몸소 친히 지공하고 짐꾼을 골라 줄 것이며, 충청도에서 위로 잔치를 한 번 하고, 경상도에서 두 번 하라. 무릇 그 수요는 그 말대로 들을 것이며, 옥석·금은·칠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채취하는 것을 막지 마라." 하고, 또 병조에 전교하기를, "임영대군 이구가 동래에 가는데, 지나는 여러 고을 수령은 각각 그 경계에서 두 부대의 군사로서 맞이하고 전송하라. 온정에 며칠 머물 때는 근처의 군사들 두 부대가 서로 교대하여 호위하라. 만일 사냥하고자 하거든 재인·백정 및 물이꾼 등 다소를 가리지 말고, 수륙 여러 장수가 모여서 사냥하여 군사의 위엄을 보여라. 또 여러 역에서는 임영 대군의 말을 내는 것을 들어주게 하라." 하였다.⁵⁷⁾

세조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관찰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임영대군이 지나갈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수령들은 그를 몸소 맞이하여 대접하고 짐꾼을 골라서 무상 대여하고, 연변의 역에서도 말을 내어주라 했다. 충청도는 그에게 한 번의 연회를 열어주고, 경상도는 두 번 하며, 연회의 정도는 임영대군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가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채취하도록 했다.

또한, 세조가 兵曹에 다음과 같이 전교했다. 임영대군이 통과하는 고을의 수령들은 그 경계에서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고 경계를 넘을 때 전송하며, 동래온천에 도착하여 목욕할 때는 24시간 경호를 명했다. 또한, 그가 사냥하기를 원하면 고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이를 시키고, 수군과 육군 제장들이 함께 사냥하도록 했다. 임영대군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癸酉靖難과 그 이후 세조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57)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1월 21일 갑자, “臨瀛大君 璆往浴東萊溫井. 御書諭京畿、忠淸、慶尙道觀察使曰: “臨瀛大君之行, 守令躬親支供, 抄給擔夫. 忠淸道慰宴一度, 慶尙道二度, 凡其所需, 惟言之聽. 至於玉石、金銀、七寶所在, 勿防採取.” 又傳于兵曹曰: “臨瀛大君 璆往東萊, 所過諸邑守令, 各於境上, 以二隊軍迎送. 溫井留連時, 近處軍士, 以二隊相遞護衛. 如欲打獵, 才人、白丁及驅軍, 不拘多少, 水陸諸將會獵, 以習軍威. 又諸驛, 聽臨瀛發馬.”

크게 협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뒤를 이었다. 이듬해 예종은 어느 왕실 여성의 동래온천행을 허가한다.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馳書하기를, "延昌尉 公主가 이제 동래온천에서 목욕 할 것이니, 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보내 주라." 하였다.⁵⁸⁾

예종이 동래온천을 찾은 연창위공주에게 담당 경상도 관찰사 휘하 수령들이 음식물을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짧은 기록이지만 이는 단종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이는 왕실의 여성이라도 할지라도 치병을 위한 온천행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⁵⁹⁾

세조가 집권한 이후 온천 치료는 유행하기 시작했고, 수요가 늘어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이 되었다.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1465) 11월 27일 신미조를 보면 온양온천에 변화가 찾아왔다.

승정원에서 왕의 교지를 받들어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온양 온천에서 무릇 목욕하고자 하는 자는 御井·御室 외에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⁶⁰⁾

1465년 세조는 승정원을 시켜 충청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58)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 3월 4일 무자, “承政院奉旨馳書慶尙道觀察使曰: “延昌尉公主, 今浴東萊溫泉, 其續致食物.”

59) 세조 대 왕실 여성들은 온천여행을 자주 갔다.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 2월 2일 신축 조를 보면 정의공주가 강원도 고성으로 온천을 간 기록이 보인다. “傳旨兵曹: 貞懿公主往浴江原道 高城溫泉, 其給轎子擔夫.” 그녀는 뒤에도 3차례 온천여행을 했으며, 그 가운데 과부가 된 뒤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

『세조실록』 권13, 세조 4년(1458) 7월 18일 계묘 조를 보면,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에게 온천에 가는 정순공주에게 곡물과 음식 등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기록이 있다. “承政院奉旨馳書忠淸道觀察使黃孝源曰: 貞順公主今往浴溫陽溫泉, 其給營米十石、黃豆五石, 竝給食物, 公主太宗女, 下嫁淸平君 李伯剛.”

60)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1465) 11월 27일 신미, “承政院奉旨馳書忠淸道觀察使曰: “溫陽溫泉, 凡欲沐浴者, 御井御室外, 勿禁.”

전에는 온양온천에 일반 사람들이 입욕할 수 없었는데 이때 와서 허락되었다. 단 그곳에 있는 국왕 전용 온정과 屋舍는 제외되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경국대전』 禮典 惠恤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넣었다.

온정이 있는 곳의 수령은 근면하고 신중한 자를 가려 정하여 房屋을 수리하고 병자를 구호하게 한다.⁶¹⁾

온천을 담당하는 원칙이 정해졌다. 온천이 소재한 지역 수령은 근면하고 신중한 자에게 온천과 그에 따른 舍屋을 관리하게 하고 병든 자를 입욕하게 하여 구호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병이 든 자는 官에 허락을 받고 온천을 찾아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닐까.

온천은 질병치료라는 의미에서 그 존재가치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왕이 온천에 다녀온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술로 잘 낫지 않는 병은 온천의 힘을 빌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왕의 온천행은 대신들과의 논쟁을 불사해야 했다. 위의 몇 가지 예에서 보듯 왕의 온천행은 백성들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온천행이 일반 왕들도 거동하기 힘든 일인데 하물며 청상과부 신씨에게 있어서라. 하물며 신씨는 치병이었다.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동래온천을 가게 된 이면에는 남편의 죽음이 근인이며 그로인해 불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유교적 이념과 대치되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심신의 고통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동래온천으로 치병 여행을 갔던 것이다. 결국 그녀의 동래온천행은 사건화되었고 세조 덕에 화근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동래온천행은 고단한 삶을 견뎌내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시대적으로는 역행하는 과감한 행보로써 성리학적인 잣대와 계유정난 등의 정치적 부침을 겪어내야만 했다.

이후 온천은 왕들이 온천욕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61) 『경국대전』 禮典 惠恤 “有溫井處守令，擇定勤謹者，修葺房屋，救護病人.”

왕의 종친, 대신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허락하는 등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VI. 맺음말

어느 사회나 과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성리학을 숭상했던 조선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려웠다. 宗室命婦는 남편인 왕자가 죽더라도 再婚이 허락되지 않았고,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될수록 그 주변 사람들로 부터 감시와 의심을 많이 받았다. 열아홉에 과부가 된 광평대군 부인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유교 사상으로 무장된 신하들은 왕실 여성의 행위가 성리학적인 잣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시정과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렇기에 광평대군 부인에 관한 기록이 실록에 남았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세종이 왕좌에 있을 때는 신하들의 간섭이 덜했고, 문약한 문종이 즉위하자 심해지기 시작했다. 왕권이 미약했던 어린 단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녀의 동래온천 外遊 사건은 단종대에 촉발되었고, 상세한 기록들이 실록에 남았다. 계유정난이 일어나 그녀의 후견자인 세조가 집권하자 그녀를 지탄하는 기록이 실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佛事를 했는데도 그러했다.

그녀 생활의 好否와 신하들의 간섭 정도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1444년 남편 광평대군이 운몽이 수포가 부어오르는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갓 태어난 여섯 달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 영순군이 있었다. 돌도 되지 않은 아들과 19세의 청상과부를 남기고 광평대군은 저세상으로 떠나갔다. 처량한 여인이라 말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녀는 불교의 세계에 들어섰다. 광평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 옆에 齋庵(見性庵)을 창건하였다. 불사는 그녀가 불행에 맞서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시아버지 세종이 살아 있을 당시 그녀의 불사에 대해 실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다가 1451년 5월 3일 세종이 죽고 큰아들 문종이 즉위한 이후 司憲掌書 金湊이 그녀의 佛事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왔다. 광평대군 부인의 원찰에 주석하던 僧 竺昭가 토당동에서 법석을 베풀자, 광평대군 부인이 주도한 불사는 不法이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김담이 주장했다. 그렇지만 문종은 불쌍한 청상과부 弟嫂를 어떻게든 변호했다.

하지만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문종은 자신의 短命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였을 때,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였다.

1452년 즉위 당시 12세의 단종 주변에는 문종의 유명을 받은 고명대신인 김종서가 조정의 인사권 및 정권과 병권을 쥐고 섭정을 하였다. 왕권이 약해지고 막강한 臣權이 등장했다.

광평대군 부인은 문종 대 불사 문제로 조정 관리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마음에 멍이 들었고, 문종이 죽고 그녀에 대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병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1453년 정월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한 그녀는 아마도 충청도 온양온천에서 치병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자 그녀의 執事 가운데 한사람이 동래온천을 추천했고 그곳으로 향했다. 당시 동래온천이 치병에 효험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온천지에 가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곳으로 가는 여행 자체가 심신을 안정시켜 마음의 요양 효과를 가져온다. 그녀는 東萊館舍에 머물면서 몇 달 동안 온천을 했다.

온천수에 포함된 여러 광물 성분이 피부로부터 체내에 흡수되는 약리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목욕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장시간 입욕할 때, 온천의 광물함유성분의 농도가 높을 때 조금씩 체내에 흡수되어간다. 동래온천은 여기에 해당하는 高張泉이다. 그녀가 온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순서를 기다리던 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453년 4월 24일 경상도 관찰사 이송지가 직접 동래온천으로 와서 광

평대군 부인을 찾았다. 지금 주상(단종)이 부인을 소환하였으니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왕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고, 그녀는 동래를 떠나 1개월 후 서울에 도착했다. 조정 대신들이 자신을 끝까지 推覈할 것이라는 말이 들렸다.

불길한 예감은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화하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다가왔다. 宗室命婦로서 죽는 것보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서웠으리라. 그녀를 수행했던 執事長 丁善奇가 의금부에 끌려가 온갖 문초를 당했다. 그녀의 동래온천행에 대한 모든 사실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녀를 옥질 모든 혐의와 증거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執事長은 곤장을 맞아 瀕死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광평대군 부인은 충격을 받아 絶命 상태에 까지 갔다.

이때 수양대군이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녀 일행이 각 읍을 지나올 때 수령들이 大君夫人의 행차인데 모른 채하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으며, 폐단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병을 얻은 지 오래된 그녀의 동래온천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행이지 外遊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端宗의 조정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수양대군의 발언으로 그녀의 추핵에 대한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그녀에게 수양대군이 구원자였고, 어려운 현실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녀를 괴롭힌 당상관들은 수양대군의 政敵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정확히 4개월 후인 10월 10일 수양대군은 癸酉靖難을 일으킨다. 당상관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척살되었다. 수양대군은 반대파를 제거한 후 의정부 영사와 이조·병조 판서, 내외병마도통사 등을 검직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광평대군 부인 신 씨를 비방하던 자들이 한꺼번에 도살되었고, 이제 그녀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1464년(세조 10) 4월 14일 광평대군 부인 자신의 원찰인 견성암(현 강남 삼성동)에서 대법회를 열었다. 세종과 소헌왕후, 무안대군과 그 부인 왕씨, 광평대군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면서 50명의 비구를 초청하고 圓通智大師를 講主로 청하여 法華道場을 열었던 것이다. 광평대군의 동복형제인 정의공주, 임영대군 내외, 영응대군 내외가 대시주로 입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하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광평대군 부인이 동래온천을 다녀온 후 그곳이 치병의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왕실 내에 퍼졌고, 왕실 사람이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459년 8월 22일 세조가 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동래온천에 가는 자신의 伯父인 양녕대군을 후대하라고 했다. 동래온천에서 치병하고 기력을 회복한 양녕대군은 주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냥했다.

1466년 1월 12일 세조는 동생인 임영대군 李瑈가 동래온천에 가므로 경기도·충청도·경상도 관찰사와 중앙의 병조에게 그의 보필을 유시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임영대군은 지나가는 길에 고을 수령들의 대접을 받았다. 짐꾼을 제공하며, 연변의 역에서도 말을 내주었다. 동래온천에 도착한 임영대군의 휴양이 시작되었고, 동래 소속의 포졸들이 24시간 경호를 했다.

1468년 세조를 이어 즉위한 예종은 왕실 여성의 동래온천행을 허가한다. 단종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왕족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들면 치병을 위한 온천행이 허락되었다. 연창위공주가 그곳을 찾았고, 치병을 위한 온천욕을 했다. 조선 왕실의 동래온천 사랑은 광평대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經國大典』 『慵齋叢話』 『大東奇聞』 『拭疣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平大君李瑛神道碑』

곽동화, 「조선 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한성대 박사논문, 2018.

이규봉, 『세종대왕 머느리는 왜 절에 들어갔을까』, 이엔지미디어, 2018.

강호선, 「조선전기 왕실원찰 見性庵의 구성과 기능」, 『서울학연구』 59, 2015.

김용욱·제길우, 「부산온천에 관한 연구」(1), 『항도부산』 3, 1963.

金珉秀, 「諺解痘瘡集要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성수, 「朝鮮前期 痘瘡 流行과 瘡疹集」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16 (통권 28호), 2010.

신병주, 「왕실의 행사: 혼례식과 그 기록」, 『장서각 ACADEMY 일반과정 왕실문화강좌』, 2011.

한경수, 「우리나라 온천 및 온천욕의 역사」, 『관광연구』 27-5, 2012.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지음, 『중세 왜인의 세계』(이영 옮김), 小花, 2003.

엔도 마의(遠藤麻衣), 「동래온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석사논문 2008.

William H. McNeil,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허정 역), 한울, 1992.

Mrs. Prince Gwangpyeong's Dongnae hot spring trip lapse and its meaning

Lee, Ju-hui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long-distance trips and hot spring trips of royal women, but they were rare, and most of them were located near Gyeonggi-do or Chungcheong-do. Of course it was only possible on a trip with her husband.

In early 1453, a parade of 27-year-old widows(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from Seoul arrived at Dongnae Hot Springs, with many Japanese in Sampo, who stayed there for months.

This was a trip beyond common sense in the place of those who worshiped the Confucianism. Naturally, the servants armed with Confucian ideas demanded corrective and punishment for the conduct of these royal women. As a result, a record of 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remained in the Annals. The happiness and unhappiness of her life and the degree of interference of her servants with her were in line with the political chang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1444, her husband, the Prince Gwangpyeong, died of a smallpox full of blisters. Her 19-year-old had a baby who was only six months old.

She entered the Buddhist world. She built a temple(gyeonseongsa)

next to the tomb to pray for her husband's name. The Buddhist service was how she faced misery. There is no mention in history about her immortality when her father-in-law, King Sejong, was alive.

Then, after King Sejong died and his older son King Munjong became king, his servant Kim Dam pointed out that her work was unfair. King Munjong somehow defended the widow's pri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as young King Danjong became king.

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would have been psychologically painful because she was criticized by the court officials for her Buddhism issues during her civilization. And it appears that the disease came with the death of King Munjong and the protection of himself completely disappeared.

In January of 1453, she stayed at the Dongnae Hot Spring Hotel in Gyeongsang-do for several months to cure her illness. However, as she exclusively used Dongnae hot spring, Danjong summoned Mrs. Gwangpyeong.

At this time, the Prince Sooyang(King Sejo) actively defended her, saying that her Dongnae hot spring trip is 'the purpose of healing the disease' and cannot be seen as a trip.

The sound of impeachment against her entered thanks to the Prince Sooyang who formed the forces in King Danjong's mediation.

Politicians who impeached her were also enemies of the Prince Sooyang. The Prince Sooyang revolutionized (Gyeyujeongnan) and seized power. Politicians who slandered her died at once, and freedom came to her.

After 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went to Dongnae hot

Springs, royal people often started to head there. In 1468, King Yejong finally allowed the royal women to visit Dongnae hot Springs for healing. Dongnae hot Springs's love of the Joseon royal family began with 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keywords :

The wife of the Prince Gwangpyeong, King Sejo(Prince Sooyang), Gyeyujeongnan, Dongnae hot Springs, a spa trip for treatment